

# 양 천 구

## 시 정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퇴직정산 등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임금지급 등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 징수)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 당시 보수월액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퇴직 시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당초 산정 징수한 보수월액 보험료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정·징수한 보수월액 보험료의 금액이 채용 관계가 끝난 후 법령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는 등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퇴직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산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및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근로자 본인에게 반환받지 않고 당해 예산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전월 임금에서 선공제한 금액에서 실제 보험료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보험료 정산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미징수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반환하지 않은 보험료 정산잔액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고,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